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 — 10명
2. 총무재무위원회 — 9명
3. 시민보건위원회 — 9명
4. 도시건설위원회 — 12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위원회 — 9명</li> <li>2. 총무재무위원회 — 10명</li> <li>3. 시민보건위원회 — 10명</li> <li>4. 도시건설위원회 — 10명</li> </ol>	<p><u>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위원회 — 10명</li> <li>2. 총무재무위원회 — 9명</li> <li>3. 시민보건위원회 — 9명</li> <li>4. 도시건설위원회 — 12명</li> </ol>

## 결산검사위원회선임(안)

## ○ 제안이유

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'91회 제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## —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

## ○ 주 문

- 결산검사위원수 : 의원 3인
-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
## ※ 관계법령

## 지방자치법

제 125 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

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 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 46 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당해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, 그 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